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. 8. 10 선고 2022가단31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신 담당변호사 지혜롬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영훈, 배향미

변 론 종 결 2023. 6. 22.

판 결 선 고 2023. 8. 10.

주 문

1.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G 임야 79,889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) 중, 피고 B은 3/11 지분에 대하여, 피고 C, D, E, F은 각 2/11 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11. 1. 14. 접수 제3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79. 10. 26. 접수 제11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단

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1977. 12. 31. 법률 제3094호, 실효)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, 위 법이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에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판사 정승연

별지